

# 문화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 회의 - 몬디아컬트 2022

(2022년 9월 28일 - 30일, 멕시코시티)

2024년 9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번역

## 최종 선언

유네스코 회원국의 문화부 장관으로서 우리는 2022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문화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회의 - 몬디아컬트 2022>에 참석했다. 이는 유네스코가 주최한 역사적인 1982년 몬디아컬트 회의와 1998년 스톡홀름 회의 이후 각각 40년, 24년이 지난 후이다. 이를 통해 문화 정책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다문화 사회의 시급하고 복잡한 현대적 과제에 직면한 국제 사회의 책무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통의 우선순위를 통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문화의 혁신적 영향을 최대한 활용하는 미래 지향적 의제를 설명하는 해당 선언을 채택한다.

## I. 전문

1. 1982년 멕시코와 1998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정책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의 기본 원칙과, 문화를 “예술과 문학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을 포함하는 사회 또는 사회 집단을 특징짓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및 정서적 특징의 집합”으로 정의하는 것을 포함한 개념적 발전을 재확인한다. 이는 유네스코의 규범적 행동, 특히 문화다양성을 “자연에 생물다양성이 필요한 것만큼 인류에게 필요한 교류, 혁신 및 창의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의 토대를 마련했다.

2. 다양하고, 장기적이며, 다차원적인 위기를 포함해 범세계적 상황과 연계된 현 시대의 도전 과제들이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바이다. 이러한 위기는 특히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손실, 무력 충돌, 자연 재해, 전염병, 통제되지 않은 도시화 및 지속불가능한 발전 패턴에 따른 극적인 결과와 연관되어 있고, 빈곤 증가, 기본권 침해, 이주 및 이동의 가속화, 디지털 격차를 포함한 불평등의 현저한 악화로 이어진다.

3. 지속가능발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문화의 역할에 새로운 추진력이 부여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는 회복력, 사회적 포용과 결속, 환경 보호,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힘으로 작용하며, 다문화 사회의 기반을 지원하는 인간 중심적이고 상황에

맞는 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문화의 힘이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새로이 하면서 확대하며, 다언어주의와 평화의 문화를 증진하고, 문화 외교를 통해 국가 내부 및 국가 간의 대화와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이는 유엔 시스템 내에서 문화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국가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는 문화와 발전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안과 유엔 사무총장의 관련 보고서, 유네스코 문화장관 회의(2019, 2020), 그리고 전 세계/지역/지역 간 수준의 여러 정치, 경제, 사회 포럼에서 문화가 역사적으로 통합된 사실에서도 다시 한 번 상기된다.

4. 문화 부문의 지속적인 취약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특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이후 문화 생태계 전반이 심각하게 붕괴되어 이로 인해 구조적 취약성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는데, 여기에는 사회적 격차와 성 격차, 문화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이 포함된다. 또한 기본적 자유, 특히 예술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문화 가치 사슬의 모든 영역에서 예술가, 문화 전문가, 실무자 및 공동체의 지위와 생계가 위협받았다. 이는 특히 여성들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5. 인권과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문화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력 분쟁 상황에서 파괴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유산의 의도적 또는 부수적 파괴, 문화재의 불법 밀매 가속화, 차별을 포함한 인권 및 문화권 침해, 생활 문화 관행의 파괴, 문화 행위자, 기관, 현장 및 시장의 취약성을 악화시킴으로써, 민족과 소득원 간 연결고리로서의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문화다양성을 손상시킨다.

6. 지난 수십 년 동안 UNESCO의 선언, 권고 및 국제 협약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표준 설정 체계가 발전해 왔음을 인정한다. 이는 문화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차원에서 문화의 보호, 보존 및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해 왔다. 여기에는 특히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1966),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2001), 「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2003),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1980), 「전통문화 및 민속보호에 관한 권고」(1989), 「역사도시 경관에 관한 권고」(2011), 「박물관 및 컬렉션 보호와 증진, 다양성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권고」(2015), 「세계저작권협약」(1952), 「무력 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1954)과 이의 두 의정서(1954 및 1999),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1972), 「수중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2001),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2003),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2005)이 포함된다.

7. 공공 정책에서 문화의 횡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는 특히나 정부, 지방 당국, 시민사회단체, 정부간 조직(IGO), 민간 부문 및 지역 사회와 같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포용적·참여적 문화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 이 주체들에는 여성, 청년, 아동, 토착민, 장애인 및 취약 계층이 포함되어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그들의 잠재적이고 창의적인 역량과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문화 정책의 광범위한 틀과 현재 선언에서 명시된 약속 내에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차원에서 행동할 수 있게 한다.

8. 디지털 전환이 사회, 특히 문화 부문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강조한다. 이는 문화 산업과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모든 이를 위한 문화 접근성 확대, 유산의 지식, 기록, 보존, 보호, 홍보 및 관리 강화, 그리고 창의성과 혁신 촉진에 대한 전망을 열어준다. 또한 우리는 이로 인해 제기되는 도전 과제들과 증가하는 위험들, 예컨대 문화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의 전세계적 불균형, 인공지능 시스템 및 충분치 못한 알고리즘 규제와 관련된 온라인 문화 및 언어 다양성의 빈곤화, 문화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예술가, 문화 전문가 및 실무자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그리고 특히 세계적 문화 플랫폼의 불균등한 집중도로 인한 전세계적 교류에서의 심화된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불평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 II. 행동 촉구

9. 우리는 문화다양성을 보호·증진하겠다는 우리의 서약을 인류의 정체성의 기반이자 문화 분야의 모든 유네스코 협약, 권고 및 선언의 근본 원칙으로 재확인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인권에 대한 존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식 체계, 관행, 물건 및 문화 유적지를 포함한 문화유산과 언어다양성에 구현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미래 세대를 대신해 유/무형 문화유산을 포함한 문화 부문 전체의 보존, 보호 및 증진을 보장해야 할 개인적·집단적 책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이는 윤리적 의무로서, 전 지역에 걸친 유산의 보다 완전한 형평성, 지리적 균형 및 대표성을 보장하며, 문화다양성과 다원주의의 근본적인 차원으로서의 문화 및 창의 산업의 증진을 확보한다. 이에 대한 존중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 촉매제이자 보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창의성과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

10. 우리는 이를 위해 모든 인권, 특히 문화유산에서부터 문화 및 창의 분야에 이르는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념한다. 이는 디지털 환경을 포함하며,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여성, 청년, 아동, 원주민, 아프리카계 후손 이산민, 장애인 및 취약 계층을 포함한 이들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 (i) 문화와 문화 생활 참여에 대한 포용적 접근과 윤리적·사회적·경제적 의무로서의 이점을 지원한다. (ii) 예술가, 문화 전문가 및 종사자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이동성을 촉진하며, 지적 재산권 강화를 포함해 그들의 지위를 옹호한다. (iii)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증진한다. (iv)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과 언어다양성을 보호·육성한다. (v) 토착민 문화의 표현을 포함해 문화적 정체성과 유산에 대한 민족과 지역 사회의 권리를 지지하는 법적, 공공 정책 체계를 구현한다. (vi) 관련 주민과의 협의 및 그들의 자유롭고 우선적이며 정보 인지에 입각한 동의를 바탕으로 문화재의 보호, 반환 및 복원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

11. 우리는 국제, 지역, 소지역, 국가 및 지방 차원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유엔 기금 및 프로그램의 정책 내에서 개발 전략과 체계 조정을 통해 문화를 공공 정책에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문화가 교육, 고용(특히 여성과 청년을 위한), 건강과 정서적 웰빙에서부터 빈곤 감소, 성평등, 환경 지속가능성, 관광, 무역 및 운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력자 및 원동력의 역할로 정착함과 동시에, 맥락에 맞는 경제적·사회적 발전 모델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12. 우리는 현 시대의 도전 과제들에 대응하고자, 관련 유네스코 문화 협약과 권고를 효과적으로 이행해 문화 정책을 강화·적용시킬 것을 요청한다. 특히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를 포함한 국가 및 지역 행위자부터 문화 기관, 시민사회, 전문 네트워크 및 전문가, 관련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다 체계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네스코의 문화 관련 기관간 플랫폼과 이들의 변혁적 잠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의 교류를 촉진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문화 부문에서의 새로운 요구와 기회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 예산 배정의 점진적인 증가를 중기 목표로, 문화를 위한 자금 조달의 보존 및 강화를 촉구한다.

13. 우리는 문화와 교육 간 시너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문화유산, 역사, 전통 지식을 포함하는 맥락에서의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i) 학교 교육과정 및 평생 학습에서,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 학습 성과를 확대하고,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향상시키며, 문화다양성, 다언어주의, 예술 교육, 디지털 문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ii) 사회의 모든 부문이 지식 전달에 기여한다는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문화를 공식/비형식/무형식 교육에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촉진한다. (iii) 필요한 기술 적응을 촉진하고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정책에 대한 구조적 투자를 통해 문화 부문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을 지원한다. (iv) 박물관, 창의적 허브, 도서관, 기록보관소 및 문화 기관의 교육적·사회적 역할에 투자한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문화 부문의 발전을 포괄하기 위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및 전문가 네트워크와 같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개정된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제의 개발을 지지한다.

14. 우리는 위기 상황, 특히 극단적인 기후로 인한 사건 및 자연재해 시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문화적 표현을 보호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무력 충돌 상황에서 문화를 표적으로 삼는 행위와 군사적 목적으로 문화유산이나 그 주변 환경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이 분야의 국제법 규범과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특히 유네스코 1954년 협약과 그 두 의정서(1954년과 1999년), 유네스코 1970년, 1972년, 2001년, 2003년, 2005년 협약, 국제사법위원회(UNIDROIT) 1995년 협약, 그리고 「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2003년)을 지지한다. 이는 관련 유엔 결의안에 기초해 조직범죄와 테러 자금 조달을 퇴치하기 위한 윤리적·안보적 필수 사항으로서의 긴급 상황에 있어 행동의 강화를 포함하며, 보호 노력, 국제적 연대, 국가 회복 전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관련 국제 기관과 조직, 그리고 문화 분야의 유네스코 협약과 관련된 기존의 기술적·재정적 메커니즘을 한 데 모음으로써 가능하다.

15. 우리는 기후 변화가 모든 형태의 문화유산과 표현을 보호하는 것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을 고려해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문화유산과 창의성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통적·토착적 지식 체계를 통한 기후 행동에 대한 문화의 역할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유네스코가 문화 분야의 유네스코 협약 및 권고, 특히 유네스코 1972년, 2001년, 2003년, 2005년 협약과 유네스코 2011년 및 2015년 권고를 포함한 틀 안에서 이 주제에 대한 운영 지침을 개발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기상기구(WM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환경계획(UNEP),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그리고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다루는 유연한 메커니즘(2020)과 같은 관련 국제 기구, 체제, 메커니즘과 시너지를 발휘해 이루어져야 하고, 문화유산(수중 및

자연유산 포함), 문화 및 창의 산업, 그리고 생계를 포함하는 전체 문화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인 기후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정책과 전략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문화 부문의 탄소 발자국 감소에 관해 회원국들과의 대화를 심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16. 우리는 유네스코 1970년 협약과 그 관련 메커니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세계관세기구(WCO), 국제사법위원회(UNIDROIT), 국제박물관협회(IC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예술 시장을 포함한 모든 관련 파트너와의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재 불법 거래에 맞서 싸울 것을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유네스코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응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i) 불법 밀매가 민족의 기억, 정체성 및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옹호 및 조치를 강화한다. (ii) 국내 입법에 형사 또는 행정 제재 도입을 장려한다. (iii) 모든 국가의 국가 및 지역 역량 개발을 촉진한다. (iv) 박물관 및 개인 수집가를 위해, 특히 문화재 원산지 증명서의 체계화 강화 및 미검증 물건 취득 방지와 관련해 예술 시장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증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v) 온라인 문화재 거래 증가를 고려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모든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의 참여/동원/조정을 보장하고, 인식 제고를 지원한다.

17. 우리는 유네스코의 주도 하에 문화재의 반환 및 배상을 위한 개방적·포용적 국제 담화(국제적 대화)를 촉구한다. 이는 불법 수출된 재산을 포함하며, 유네스코의 보호를 받는 원산지 국가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1970년 협약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도 포함한다. 이는 민족과 지역 사회가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향유할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윤리적 의무이며, 해당 국가들의 증가하는 요구를 고려해 사회적 결속력과 문화유산의 세대간 전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유네스코가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문화재를 원산지 국가로 반환하거나 불법 획득의 경우 배상하기 위해 기존의 법적 체제나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역량 강화와 교육 및 문화적으로 민감한 접근 방식, 특히 박물관과 문화 기관의 교육 및 문화적 접근 방식 촉진을 통해 각국이 현장에서 문화재를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또한 유네스코가 문화재 불법 거래에 맞서 싸우는 선도적인 유엔 기관으로서 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계획을 제안하고, 예술 시장 관계자, 박물관, 개인 수집가들을 독려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문화재 거래상을 위해 국제 윤리 강령의 갱신된 문서를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

18. 우리는 유네스코 2005년 협약과 유네스코 1980년 권고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회원국 내 창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문화 및 창의 부문의 발전을 촉진할 것을 다짐한다. 이는 특히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동성을 촉진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보다 잘 규제하고 참여적 대화에 참여시키는 것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우리는 유네스코가 2017년 「디지털 환경 협약 이행에 관한 운영 지침」과 2021년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의 문화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이 문화 부문에서 디지털 혁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다음을 목표로 한다. (i) 문화 시장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촉진한다. (ii) 민간 부문, 관련 NGO 및 IGO, 그 중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국제노동기구(ILO)는 물론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및 인터넷 제공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구조화된 대화를 촉진해 정책 및 규제 체제,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보급 및 소비를 위한 실행 계획을 설계·개발·실행한다. (iii) 문화 고용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구축하고,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및 남남/남북 협력 촉진을 통한 문화유산의 보호, 홍보, 디지털화, 목록화를 강화한다.

*우리 문화부 장관들은 국제적으로 중대한 시점에 멕시코에서 만나 지속가능발전을 가능케 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글로벌 공공재로서 문화를 인정하는 강화된 다자주의에 전념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유네스코가 문화에 대한 범세계적이고 전문화된 권한과 그 규범적 도구 및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의 공동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우리의 책임을 충분히 최대한 다하고자 한다.*

19.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문화를 범세계적 공공재로 확고히 정착시키고, 2030년 이후 발전 의제에서 문화 자체를 구체적인 목표로 통합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회원국, 시민사회, 학계,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회담을 시작해 글로벌 공공재로서 문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2024년에 예정된 유엔 미래 정상회의에서 사회 정의와 인간 존엄성을 통해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창립 사명을 반영해 문화의 포용을 위한 옹호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20. 문화가 전세계적 공공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공동의 의제’ 보고서와 유엔 총회가 채택한 「유엔 창설 75주년 기념 선언」의 이행을 진전시키며, 향후 문화 및 공공 정책과 전략, 그리고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적 조치를 알리기 위해 우리는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그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며, 측정하기

위한 도구와 메커니즘을 조정·강화·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문화가 모든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념 연구를 관련 데이터와 함께 개발하고, 4년마다 포괄적인 문화 정책에 대한 국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정보, 데이터, 기존 지표를 바탕으로 하며, 특히 문화 분야에서 기관이 보유한 규범적 도구의 총체에 대한 정기 보고서 체계 및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유네스코가 보유한 통계 및 지표 체계에 기반한다.

21. 우리는 문화 분야의 진전, 영향, 그리고 기회를 측정하기 위해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유네스코가 2025년부터 4년 단위 세계 문화정책 포럼 개최에 대해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 포럼은 적절한 기존 절차와 메커니즘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관련 주체들의 건설적이고 포용적인 대화를 통해 문화정책의 우선 영역을 다루고, 국가 간 다자간 행동,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하며, 유네스코의 집행 기구 체제 내에서 유네스코의 전략적 업무 방향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이는 문화정책에 관한 세계 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2.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유네스코의 중기 전략과 프로그램 및 예산 체계 내에서 본 선언의 조항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고, 유네스코 회원국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효과적인 대화를 지속하며, 이행 성과와 과제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